

2026년 동물자유연대 풀뿌리단체 활동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 모집 안내

1. 사업 취지

-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이룬다'는 동물자유연대 미션에 부합하는 시민 인식 개선 활동을 발굴하여 동물권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 풀뿌리단체의 의제 전문성과 기획력을 강화하여 질적 성장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함
- 다양한 동물권 내 활동 영역의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풀뿌리단체의 장기적 활동 기반 마련함

2.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풀뿌리단체 활동 고도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6월 5일 - 2026년 12월 23일
- **지원대상** :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위한 시민 인식 개선 활동을 개선하는 비영리단체
 - ① 1년 이상 활동내역 증빙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 필수 제출)
 - ② (지역)사회 내 동물권, 동물복지 관련 현안·의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현장 및 시민 인식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단체
 - ③ 동물자유연대와의 협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지를 가진 단체
 - ④ 동물자유연대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단체, 참여했던 단체 모두 지원 가능**
- **우대사항**
 - ① 동물권 현안 또는 의제 관련해 구체적인 문제 정의 및 해결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단체
 - ② 사업 수행목표(활동·실행)와 성과목표(수행목표로 인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단체
 - ③ 동물권 현안 또는 의제 관련 구체적인 활동 경험을 보유한 단체
- **지원 제외 대상**
 - ① 구성원이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단체
 - ② 사업기간 중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타 단체 중복지원을 받는 단체
 - ③ 대표자 또는 사업 담당자가 없는 단체
 - 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가 운영 중인 단체·모임
 - ⑤ 영리 목적을 띠고 운영하는 단체

3. 지원 규모 및 내역

□ 지원규모 : 총 5개 단체, 단체별 최대 10,000,000원 / 총 50,000,000원

□ 지원주제 : 아래 주요의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유기동물,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동네고양이(길고양이)

□ 지원내역 : '동물자유연대 지원사업 예산 세부지침' 필수 확인(게시글 내 첨부)

① 사업비

- 제작비 : 지원주제 관련 시민 인식 개선 활동을 위한 각종 캠페인, 연구조사, 정책 대응 활동, 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 (최대 500만원 편성 가능)
- 자문비 : 지원주제 관련 시민 인식 개선 활동에 필요한 해당 주제 전문가 자문 비용
- 진행비 : 지원주제 관련 세미나, 간담회·토론회·포럼 등 시민 인식 개선 활동 관련 행사 진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

② 운영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AI 서비스, 디자인 툴 유료 구독 지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단기 시설(장소),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비용 지원
※ 기존 단체 사무실, 보호소 등은 임차비 지출 불가

③ 최종 지원금은 선정단체의 사업 내용, 예산 계획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 운영 일정 및 세부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6월 5일 - 2026년 12월 23일

구분	일정	비고
사업 신청 접수	6월 5일(목)-21일(일) 23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6월 26일(금)	선정/미선정 단체 개별안내
2차 면접심사 진행	6월 30일(화)	온라인(zoom) 진행
최종 선정결과 발표	7월 1일(수)	선정/미선정 단체 개별안내
협약식 및 예산집행교육	7월 8일(수) 14시	대표 필참
사업 수행	7월 8일(수)-12월 7일(월)	단체별 1회 모니터링 진행
중간결과보고 제출	9월 20일(일) 23시	
중간공유회	9월 30일(수) 저녁	대표 필참, 온라인 진행
최종결과보고 제출	12월 16일(수)	
성과공유회	12월 23일(수)	대표 필참

※ 사업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문 숙독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 링크 : <https://forms.animals.or.kr/nanumadvancement>

- ① 단체 기본 정보 및 사업계획서
-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고유번호증 등 활동 증빙서류

□ 선정방법

- ① **서류심사** : 신청단체 중 심사를 통해 80점 미만인 곳 탈락
 - 동물자유연대 내부위원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 80점 이상인 단체가 없거나, 충분한 수의 적격단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동물자유연대 이전 사업 선정단체는 연속 지원 기준에 의한 심사 추가 진행
- ② **면접심사** : 서류심사 통과 단체 중 온라인 면접을 통해 80점 이상인 곳 중 고득점 순으로 총 5개 선정
 - 동물자유연대 내부 및 외부 전문위원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 80점 이상 득점 또는 적격단체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③ **최종 선정 발표** : 2026년 7월 1일(수)
 - 심사를 통과해 최종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탈락 또는 선정 취소됨. 이런 경우 다른 탈락 단체 중 80점 이상을 득하고 적합한 단체가 있을 시 최종 선정 대상으로 추가 선발
 - 선정단체/미선정단체 개별 문자·메일 안내

□ 심사 기준표

분류	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 수행 능력(20)	수행역량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인력현황	•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을 위한 담당 인력 편제 여부	10
단체 건전성(20)	활동 현황	• 이전 활동의 구체성 및 동물자유연대 미션과의 적합성	10
	운영의 투명성	• 후원금 모집 및 사용내역의 공개 여부	10
사업 필요성(30)	의제 적절성	• 선정 사업 주제 및 의제의 적절성·시급성	15
	목표의 구체성	• 수행목표 및 성과목표의 구체성	15
사업 효과성(30)	기획 역량	• 시민 인식 개선 활동의 창의성, 파급력, 지속가능성	20
	활동 경험	•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정책 관련 활동 경험 보유 여부	10

□ 협약식 안내

- ① **협약기간** : 2026년 7월 8일 ~ 2026년 12월 16일까지
- ② **협약내용** : 사업기간, 사업비 지급, 사업비 정산 및 평가 운영 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 단체 대표 7월 8일 협약식 필수참여

□ 사업비 지급

- ① **지급시기** : 2회 (1회차 60%, 2회차 40%) 단, 지급비율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
- ② **지급방법**
 - 1회차 : 협약 체결 및 예산집행교육 참여 후 지급(계좌이체)
 - 2회차 : 모니터링 및 중간결과보고서 검토 후 지급(계좌이체)

③ 지급 관련 제출 자료

- 사업비 전용 통장 사본
: 기존 사용 중인 단체 통장을 0원으로 만든 후 본 사업 전용으로만 활용하거나, 본 사업 전용 통장을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신규 개설 후 제출
- 사업비 전용 통장 체크카드 사본
- 단체(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
- 동물자유연대 사업비 지급 관련 서식 (추후 안내)

□ 사업 중간 점검(현장 모니터링, 중간공유회) 및 중간결과보고서 제출

- ① 모니터링 진행 : 사업기간 내 단체와 일정 협의해 1회 진행
 - 내용 : 사업 애로사항 및 수행 과정 보완 필요 사항 등 의견 수렴
- ② 중간공유회 진행 : 모니터링 종료 후 1회 진행
 - 내용 : 참여단체 사업 수행 상황 및 활동 사례 공유
 - 일정 : 2026년 10월 22일(목)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진행)
- ③ 중간결과 보고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모니터링 결과 및 중간결과보고서 검토하여 사업비 2차 교부 진행
 - 검토 결과 '미흡' 단계에 해당하는 단체에는 2차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산집행기준에 어긋나는 사업비 집행건이 있거나 사업 방향이 타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와 다른 경우, 사업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①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 **2026년 12월 16일(수) 23시까지 제출**
- ② 제출서류 : 사업 결과보고서, 최종정산내역서 및 증빙자료, 성과공유회 발표자료

□ 성과공유회 참여

- ① 성과공유회 일정 : **2026년 12월 23일(수) 예정**
 - 단체 대표 필수참여
 - 자세한 장소 및 시간 추후 안내
- ② 성과 발표를 위한 별도 서식 배포 예정

□ 문의 : 동물자유연대 나눔사업팀

- ① 메일 : nanum@animalkorea.org
- ② 전화 : 02-6952-8023 (평일 10시-17시 사이)

[별첨]

2026년 풀뿌리단체 활동 고도화 지원사업 협약안

동물자유연대(이하 '공'이라고 한다)와 _____(이하 '존'이라고 한다)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존'의 활동 고도화를 지원함으로써 풀뿌리단체의 질적 성장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 명 : 2026년 풀뿌리단체 활동 고도화 지원사업
- 협약금액 : 금 일천만원정(10,000,000원)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6일까지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공'이 '존'에 활동 고도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과 '존'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공'과 '존'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 1 (지원 범위 및 방법)

- ① '공'은 '존'이 제출한 신청서와 그 예산 내역서 상의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 ② 이때 '존'은 항목별 예산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계획서 예산 계획 외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공'과 '존'의 협의 후에 지원한다.
- ④ 지원금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의 2 (지원금 지급)

- ① 지원금은 2회에 나누어 지급한다.
 - 1차: 협약 체결 및 예산집행교육 참여 후 60% 지급
 - 2차: 모니터링 및 중간결과보고서 검토 후 40% 지급
- ② 지급 비율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 3 (결과보고 및 정산)

- ① '존'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사업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존'은 사업 완료 후 잔여 지원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준수사항)

- ① '존'은 협약 체결에 따른 '공'의 지원 사실을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월별 1회 이상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공유하여야 한다.
- ② 협약기간 중 1회 이상 사업 점검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공'은 협약기간 동안 '존'에게 지원한 내역 및 '존'이 제출한 중간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을 '공'의 사업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존'은 협약기간 중 개최되는 중간공유회 및 협약 종료 후 개최되는 최종 성과공유회에

필참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공유회를 위해 '존'이 제출한 내용을 '공'의 사업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 ⑤ '존'은 지원사업비 집행 내역을 후원회원 등에게 월별 1회 이상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필히 전체공개 하여야 하며, 지원사업 외 후원금 등의 사용내역은 공개를 권장한다.
- ⑥ '존'의 모니터링 결과 및 중간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미흡' 단계에 해당하는 '존'에게는 추가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⑦ '존'이 예산변경 신청 없이 기제출한 예산집행계획과 상이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공'은 사업비를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협조)

- ①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외 '공'이 '존'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 ② '존'의 활동지역 내에서 피학대동물,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공'이 구조와 보호를 요청할 경우 '존'은 적극 협조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공'이 부담한다.
- ③ '공'은 '존'에 동물권 관련 캠페인 협력 및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공'과 '존'이 서로 합의한 경우
- ② 신청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③ '존' 활동 내용이 형사 고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단체 활동의 위법성이 공론화된 경우
- ④ '존'이 단체 해산, 운영 중단,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해 본 협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공'이 판단한 경우
- ⑤ '존'이 본 협약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 ⑥ '존'이 정당한 사유 없이 4조, 5조 각호를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 ⑦ '존'이 후원금 사용을 포함한 단체 운영 관련해 비리, 각종 분란이 발생하는 경우
- ⑧ '존'이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경우
- ⑨ '공'의 대표 또는 사업 담당자는 협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결재를 득하여 해지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로 협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단, 협약서 제7조(지원금액의 환수) 항목은 '공'과 '존'의 협약 종료 시점에서 향후 5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제7조 (지원금액의 환수) 다음 각호의 경우 '공'은 기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며, '존'은 '공'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① 제6조의 제1항으로부터 제8항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한 경우
- ③ 지원금이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단순착오인 경우에는 과오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한다.
- ④ 본 사업 지원금의 증빙서류를 타 지원사업 또는 타 모금내역 증빙으로 이중 활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 경우 해당 지원금액만 환수한다.
- ⑤ 환수 결정 시 '존'은 '공'에게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 공유 및 상호 합의 하에 반환기일 연장이 가능하다.

제8조 (정보의 제공 및 비밀유지)

'공'과 '존'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사항 및 협약내용에 대해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약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본 협약 목적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9조 (양도의 금지)

'공' 또는 '존'은 본 협약서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위임할 수 없다.

제10조 (협약변경)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제11조 (협약의 해석 및 분쟁 해결)

- ①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 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공'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공'과 '존'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